#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	2015. 11. 26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# 1. 제안이유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일부 개정되어(2015. 7. 1)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개정 내용 반영하여 쓰레기봉투 감면대상 구체화함. (안 제23조)
  - (현행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
  - ⇒ (개정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나. 용어순화 및 법령 인용조문 변경함.
  - 이라 함은 ⇒ 이란, 당해 ⇒ 해당, 동 ⇒ 같은, 기타 ⇒ 그 밖에, 규정에 의하여(의한) ⇒ 에 따라(따른)

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및 제7조
- ○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, 제25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 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- (가) 예고기간: '15. 10. 28. ~ 11. 17.
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##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4호를 제7호로 하며,

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(종전의 제14호)까지 중 "이라 함은"을 "이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·제3호·제4호 중 "의 규정에 의한"을 "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4조의3제2항제3호, 제18조제1항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4조의3제2항 본문, 제11조제2항, 제12조제3항 중 "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에 따라"로 한다.

제4조의4제1항, 제5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12조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2항, 제25조제2항 중 "의 규정에 의한"을 "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(이하 "사업장생활계폐기물"이라 한다) 기타"를 "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"로 한다.

제6조 중 "시행규칙"을 "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"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부터 제3항의

규정에 따른"으로, 같은 조 제7항 중 "의 규정에 의거"를 "에 따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"동"을 "같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"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(이하 "공사장생활폐기물"이라 한다)"를 "공사장생활폐기물"로 한다.

제3장 및 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4항 중 "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"을 "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5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때"를 "경우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의 규정에 의거"를 "에 따라"로 "타"를 "다른"으로 "때"를 "경우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14조제5항에 따른"으로 "각호에 의한다."를 "각 호에 따른다.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동조 제1항제3호"를 "제1항제3호"로 한다.

제2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별지 제1호·제2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폐기물관리법」,
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법시행	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및 같은법시	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
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	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생활폐기물" <u>이라 함은</u> 법 제2조제2호	1 <u>이란</u>
<u>의 규정에 의한</u> 폐기물과 제2호 <u>의 규정에</u>	<u>에 따른</u> <u>에 따른</u>
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	
사무실,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	
성질,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.	
2. "사업장생활계폐기물"이라 함은 사업장	2 <u>이란</u>
페기물중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	
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<u>의 규정에 의한</u>	<u>에 따른</u> -
공장으로서 「대기환경보전법」・「수질 및	
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소음	
진동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	
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	
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	
폐기물을 말한다.	0 4 7
3. "대형폐기물" <u>이라 함은</u> 가정 또는	
제2호 <u>의 규정에 의한</u> 사업장에서 배출	
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 <u>의 규정에 의한</u>	<u>에 따른</u>
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, 가전 제품, 사무용기자재, 냉·난방기등 별표	
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.	
4. "재활용가능폐기물"이라 함은 가정	
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	4이란
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	에 따른
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	<u>"" "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</u>
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	
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5. "대행" <u>이라 함은</u>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·운반·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 6. "건설폐기물" <u>이라 함은</u> 구조물의 철거,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	5이란 
잔재물 (벽돌, 블록등), 목재류, 철재류,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. 7. ~ 11. (삭제 2004.02.10) 12. "문전수거"라 함은 배출자가 제7	  <삭 제>
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가 직접 상차 수 거하는 것을 말한다. 13. (삭제 2004.02.10) 14."공사장생활폐기물"이라 함은 생활	7이라
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.	
제4조의3(청결유지 조치) ① (생 략) ② 제1항 <u>의 규정에 의하여</u> 조치를 명 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의3(청결유지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에 따라
1. ~ 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	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
제4조의4(청결유지 이행) ① 제4조의3 제1항 <u>의 규정에 의한</u>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·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4조의4(청결유지 이행) ① <u>에 따른</u> 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,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(이하 "사업장생활계폐기물"이라한다)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(이하 "폐기물처리장"이라 한다)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. ② ~ ③ (생 략)	제5조(적용범위) ①
제6조(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) 군수는 법 제14조 및 <u>시행규칙</u>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~ 2. (생 략)	제6조(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) <u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</u> 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
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(이하 "쓰레기 봉투"라 한다)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 략)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생활폐기물, 연탄재, 대형폐 기물,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・ 운반·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 할 수 있다. ⑤ ~ ⑥ (삭제 2004.02.10) ⑦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.	제7조(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) ① 에 따른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 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,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 하고,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·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	제8조(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) ①에 따른해당
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. 다만, 재활 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.	에 따른 해당
제8조의2(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) 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·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(이하"공사장생활폐기물"이라 한다)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,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.	제8조의2(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) ① <u>공사장생활폐기물</u>
② ~ ③ (생 략)  제12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)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하여금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② 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제12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의 대행) ①에 따른         마른에 따른         ②에 따른         ②에 따른

현 행	개 정 안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처리업무가 원 활히 수행되도록 지도·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, 영,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 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	③에 따라
제강제물수집원반처리업의하가및지도감독	<u>&lt;삭 제&gt;</u>
제13조(폐기물처리업 허가)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② 군수는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·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③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기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기타 시설등을 추가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6조(쓰레기 봉투의 제작) ① ~ ③ (생 략)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. 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사양은 "별표 2"와 같다. ⑥ (생 략)	제16조(쓰레기 봉투의 제작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경우</u> 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⑤ 제2항에 따른 ⑥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)	제18조(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)
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	①
쓰레기봉투 판매소(이하 "판매소" 라 한다)	
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	
한다.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(이하	
"판매자"라 한다)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	
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,	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각 호의 어느 하나
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.	
1.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	1
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	경우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제17조제1항 <b>의 규정에 의거</b> 판매소의	3에 따라
신고를 한 자가 <b>탄</b> 장소로 위치를 변	다른
경한 <u>때</u>	<u>경우</u>
4. <u>기타</u>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<u>때</u>	4. <u>그 밖에경우</u>
② 제1항 <u>의 규정에 의한</u> 판매소에는	② <u>에 따른</u>
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"별표 3"과	
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	
하여야 한다.	
제19조(쓰레기 봉투의 매수) ① (생 략)	제19조(쓰레기 봉투의 매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제1항 <u>의 규정에 의한</u> 매수	② <u>에 따른</u>
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	
주지시켜야 한다.	
레이크/케팅레퀴디시 스키스비트리	레이1코/케팅레리모시 스키스마 티키
제21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	제21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
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 <u>법 제14조제4항의</u>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	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 <u>법 제14조제5항에</u>
<u> </u>	<u>따른</u>
한다)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	각 호에 따른다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<b>동조 제1항제3호</b> 의 판매가격 산정은	2 <b>利1항제3호</b>
별표 4의 1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	<u> </u>
가격은 별표4의 2와 같다. 이 경우 폐기물	
수집·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	
장비에 의하여 수집·운반되고 위생처리	
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수수료의 감면등) 군수는 다음	제23조(수수료의 감면등)
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	각 호의 어느 하나
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	
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	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의 규정에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보고, 검사등) ① (생 략)	제25 <b>조(보고, 검사등)</b>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<b>규정에 의한</b> 관계공무원	②에 따른
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	
요구가 있을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	
해야 한다.	